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8. 12 선고 2020나5920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, 피항소인 1. A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7. 1.

판 결 선 고 2021. 8. 12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5. 7. 선고 2018가단259576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가.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 1) 피고 A과 E 사이에 2017. 7. 6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2) 피고 A은 E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7. 7. 10. 접수 제109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나.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 1) 피고 D과 E 사이에 2017. 7. 31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 2) 피고 D은 E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7. 8. 2. 접수 제122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1의 가, 나항 기재와 같다(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주문 제1의 가, 나항 각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(제1심판결 중 피고 A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였으나, 위 피고가 인지대 보정명령에 불응하여 2020. 6. 15. 위 피고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‘2. 다시 쓰는 부분’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다시 쓰는 부분(제1심 판결문 16면 ‘5.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’ 부분)

「5.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

사해행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2018. 6. 25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(주)F의 G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59,840,82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,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(주)F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(주)F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, 해지되지 않은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 소멸 전일까지의

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%,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. 6. 25.이고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(주)F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7,370원이며, 원고는 (주)F에 대한 법적절차비용으로 4,704,5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한편,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, 즉 ① E이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그 채무초과상태는 이 법원에서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, ② 이 사건 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E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,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1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그러므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E에게, 피고 A은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, 피고 D은 이 사건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」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석동, 판사 이보람, 판사 구성훈

[별지]

목 록

1. 경상북도 문경시	입야 8641㎡
2. 경상북도 문경시	대 559㎡
3. 경상북도 문경시	입야 32250㎡
4. 경상북도 문경시	대 440㎡
5. 경상북도 문경시	전 2732㎡
6. 경상북도 문경시	입야 182㎡
7. 경상북도 문경시	입야 238㎡
8. 경상북도 문경시	전 566㎡
9. 경상북도 문경시	전 3121㎡
10. 경상북도 문경시	담 846㎡
11. 경상북도 문경시	입야 232㎡
12. 경상북도 문경시	전 162㎡
13. 경상북도 문경시	대 205㎡

